



## 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등 개선사항 알림

1.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보건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3. 이에,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주요 개선사항

- (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) 근무 간격 완화 및 근무형태 명확화('17.8.14일 시행)
  - (현행) 주 1회 근무 → (개선) 분기 1회 방문\* 근무
  - \* 그간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, 근무형태(원격근무 혹은 방문근무)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
- (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)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('17.8.14일 시행)
  - (현행) 최대 2개 기관 → (개선) 최대 5개 기관
- 품질관리교육 이수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가능 ('18년 상반기 시행)
  -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\*을 이수한 장비설치기관의 상근의사는 해당 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(유효기간 : 3년, 보수교육 : 매3년 마다)
  - \* 21시간 교육, 2시간 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이수(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교육)
- (대한영상의학회-의료기관)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('17년 11월 시행)
  - (현행)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해 채용 → (개선) 대한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(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)
  - \*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'17.11월 이후,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([match.radiology.or.kr](http://match.radiology.or.kr))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

